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54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	2
※ 참고자료	8
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개요	8

I. 제안경위

2025년 9월 5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위상과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운영 근거 등 마련

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¹⁾ 전담 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 등의 출연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안 제9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 ⑤ (생 략)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⑥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u>
⑦ <u>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u>	<삭 제>
⑧ <u>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u>	<삭 제>

1) 물의 순환 과정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하천의 수위·유량, 유역의 강수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업무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
· 운영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계
획·관리 및 물재해 대응에 필요
한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원의 설립·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
· 감독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최근 온난화의 심화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²⁾되면서,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재해예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자원 자료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하천의 수위·유량, 유역의 강수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등의 조사·계획 업무(이하 “수문조사”라 함)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⁴⁾.

2)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3.7도, 이듬해에는 14.5도로, 연이어 연평균 기온 기록이 경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2017년에서 2024년 기온 상승률이 1912년에서 2017년 기온 상승률보다 더 높아, 최근 7년 사이 한반도의 온난화 추세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온난화에 따라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가 더 강하고 빈발하게 나타나며, 특히 태풍의 극한 강수영역은 최대 37%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한국기후위기평가보고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3) 법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유역·호수·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2.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의 설계
4.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5. 제8조에 따른 홍수 및 갈수의 예보
6.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

[표]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요건(시행령 제8조제1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은 수문조사,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 등 학술·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2018년부터 현행법령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음⁵⁾(참고자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개요).

기술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행정규칙)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⁶⁾, 고시에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⁷⁾, 장기 계획 수립

5)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요 연혁

- | | |
|---------------------------|--------------------------|
| ○('17. 1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 ○('18. 01.)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
| ○('19. 02.) 기타공공기관 지정 | ○('22. 02.)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

6) **시행령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 안정적·연속적인 수문자료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나⁸⁾

현행 법률상 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의 출연이나 지원 근거가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예산 편성 시 기술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출연금은 독립 항목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국가 출연 사업인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지원(5134-301)”사업의 개별 사업 단가에 포함하여 편성 및 집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음⁹⁾.

이에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 등의 출연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기초 공공데이터인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생산·관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제1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국가재정법」 12조(출연금)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9) 2026년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5134-301)” 예산안도 이와 같이 내역사업별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외에 인건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가 혼재된 채로 편성되어 예산안 심사 시 편성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고, 결산 심사 시에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26년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일부 사업 예시)]

’26년도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5134-301) 예산안	
자동유량 운영·설치 사업 27,481백만원	
• (운영) 218개소 × 51백만원 = 11,133백만원	• (사업출연금) 17,384백만원
• (설치) 42개소 × 319백만원 = 13,398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 10,097백만원
• (유지관리) 25개소 × 120백만원 = 2,950백만원	- 상용임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수송비 등

자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제출 자료 재구성

다만, 개정안은 기술원의 업무를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¹⁰⁾와 위임의 구체성·예측가능성 확보 필요성¹¹⁾ 등을 고려하여,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각 호로 분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조사·연구 및 시험·분석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 4의2. 규제·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조사·연구결과와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음(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의 평가, 이부하, 국민대법학연구소).

※ 참고자료 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개요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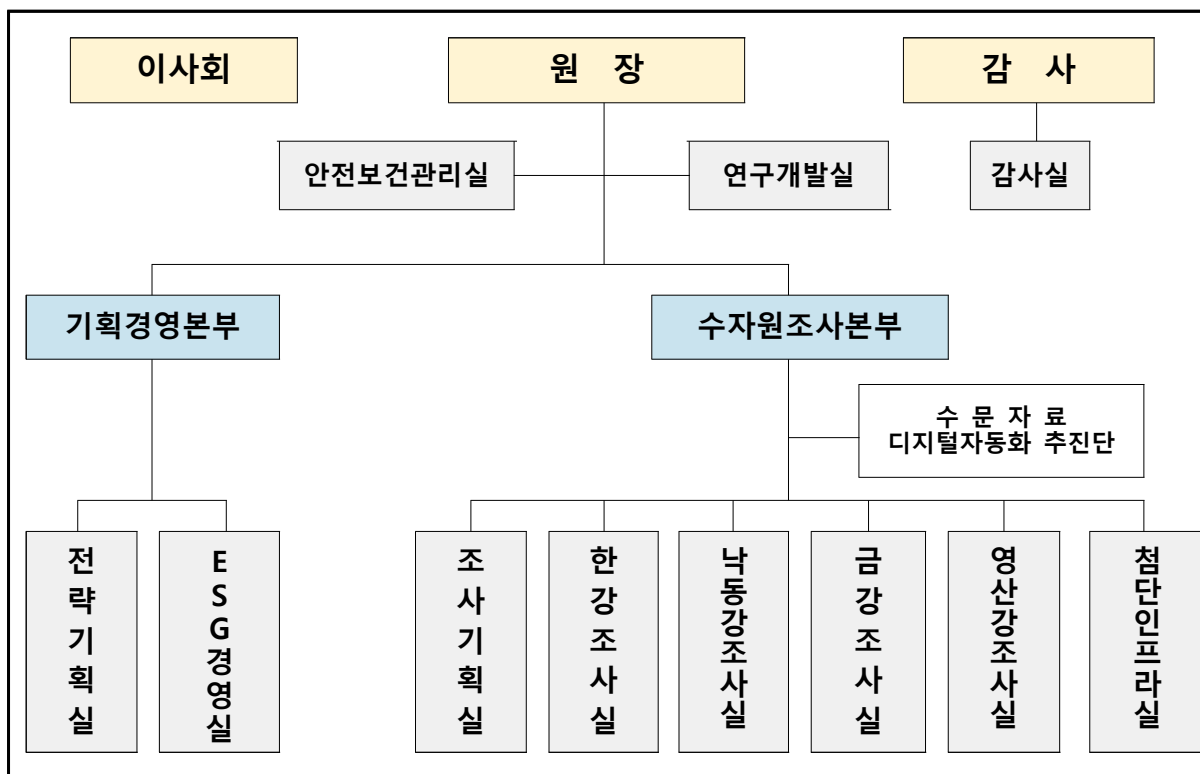
□ **법적 근거** : 민법 제32조, 수자원법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 **주요 연혁**

- 2017. 12 : (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 2018. 1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 2019. 2 : 기타 공공기관 지정
- 2022. 2 :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 **일반현황**

- (법적성격)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 (대 표 자) 이영기 (3대 원장, 임기 3년 '23.11.1~'26.10.31)
- (조직인력) 2본부 11실 1단, 180명 (정원 183명) 근무('25.10월 기준)
- (운영예산) ('23) 357억 원 → ('24) 440억 원 → ('25) 670억 원



12) 자료: 한국수자원기술원